은행은 본인에게 이 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과 이 약정서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u <b>-</b>	<b>-</b>		1			보이	확인자	팀 원	팀 장	부점장
		내설	할거	래약정서	<b>1</b> (가계용)				761	0.2		100
		(?	작성일	자:20 .	. )							
	1.	본인은	주식회사	사국민은행(이하 "은	- 행")과 아래의 조건에 따라	나 대출거래를	를 함에	있어 은행여신	l거래기:	본약관(가계용	용) 및 이 약정서	사본을 확실
수 입 인 지	2.	이 수당( 본이은 :	아고, 수 개인(신	요 내용에 내아어 중 용)정보 조회 · 수집	응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 · 이용 · 제공 동의서를 이	었습니다. 해하고 동의	) 하며, 7	'II인(신용)정보	- 수집 ·	이용 · 제공어	대한 고객권리	1안내문에 관
		해 자세	히 설명	듣고 수령하였습니	<del></del> 국.							
		<u> 본인</u>	네갈는	네물시신 중 네물이시	율이 인상될 수 있으며, 이에 !	떠나 세구설 :	구급의 전	5기달 ㅜ 있니	<u> </u>	네이어 중군인		에이었습니다. 또는 인)
		소										
제1조 거래조건(	거래방식이 <i>-</i>	수 개로	되어 있	있는 경우 은행 직원	원의 설명을 듣고 해당도	l는 " <b>□</b> " 나	에 "∨	" 표시합니다	ł.)			
① 대출과목(종류)	_					01 (1-1	②거	래 구 분		□개별가	래 □한도기	'  래
③대출한도금액	금					원 (₩						)
④ 대출개시일	<b>□</b> 20 년		월 .		l출실행일을 개시일로 하						. 0	01
⑤대 출 기 간		년 (	)	개월 ※ 대출기간 9	만료일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	- 기재	(6) 대출	출기간만료일		20 년	월	일
	□ 고정금리 [은행여신거리	래기본	ᄪ	1171 [120]	□연( )%		u - 1 - <del>-</del>	☐ MOR	•	)%	\0/	
	약관(가계용)	제3조	네꿀/	기간 만료일까지	[ <b>신</b> 규취급액기준	□ 신잔 <sup>Q</sup>		□ 잔액기 		•	)%	
	제2항 제1호 4	신댁]			※ 위의 금리는 제6조의 우 ☐ MOR + ( )%	네금디 선 (	)	%가 적용된 금		f. + ( )9	у <u>дэ</u> г	TU사저즈기
	□ 변동금리			기본금리	□ 신규취급액기준	□신잔의	·····································	<b></b> ( <b></b> 잔액기			<u>//</u> )% : 매	재산정주기 ( )개월
	[은행여신거리	래기본		1001	□ 수신(신탁)금리 + (	)%	116	기타:		71 177 . (	770 "	)
	약관(가계용) : 제2항 제2호 신			우대금리	대출실행시 적용 우대금리	기는 연 (	)%로		·	정한 방법에 대	다라 재산정되어	· 서적용됩니다.
⑦대출이자율				최종금리	「기본금리 – [우대금리	( )%]	」로 결	정된 금리가	덕용됩니	l다.		
				1. 고정기간 대출개시일로부터	□연( )%			☐ MOR	+ (	)%		
	□ 혼합금리	기본		( )개월간	[ 🗖 신규취급액기준	□신잔인	백기준	□잔액기	[준] CC	)FIX + (	)%	
	[은행여신거래기본 약관(가계용) 제3조 제2항 제2호 선택]		금리	2. 변동기간	☐ MOR + ( )%							재산정주기
				고정기간 종료 이후	[ 집 신규취급액기준	□ 신잔 <sup>Q</sup>		□잔액기			)% : 매	
				우대금리	대출실행시 적용 우대금리						따라 재산정되 <sup>0</sup>	<sup>1</sup> 석용됩니다.
				최종금리	「기본금리 - [우대금리	( )%]	고 걸	정된 금리가 ?	기용됩니	14.		
		이자는	-( 🗖 🖁	일단위 일계산. 🗖 🤅	□ 월단위 월계산, □ 월단위	 일계산), 지		 :금은 일단위.	 로 계산i	 하며, 제5조(	 게서 정한 방법	에 따라 지연
8이 자 및 지 연 배상금계산방법	개별거래	배상금	- <b>( _</b> . 금률이 ?	덕용 됩니다. 다만,	일단위 일계산 및 월단위	일계산은 1	L년을 3	65일(윤년은	366일	- i, iis— )로 계산합니	ii 1 02 02 I다.	
	한도거래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일단위로 계산하고, 제5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연배상금률이 적용되며,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계산합니다									로 계산합니다.		
⑨이자율변경시 적 용 기 준					. 다만, 분할상환대출은 변							
⑩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 □ 해당 없음	Ī	<b>□</b> 7	l타 (	)%×(잔존일수÷대출기간)	)」으로 하며	1, 세부/	사항은 제4조	에서 정	한 방법에 띠	) ) )	
	70-871711			일에 전액 실행합니		다우! 시구미수	יון ורי					
⑪ 대출실행방법	개별거래 				은행이 정한 기준에 의해 <b>는 기간 중에 동 대출금</b> 술			으에느 미신히	배되 자(	여 대축근이	부한 신핸이 3	5다됫니다
	한도거래	_		<u>, , , , , , , , , , , , , , , , , , , </u>		2 6 7 0 6	20 0	1 112 12	<u> </u>	1 11207	CE EO I	)C 1 1.
	□ 일시상환				고, 대출기간 만료일에 다	l출원금을 7	전액 상	환합니다.				
		미거	치기간	대출개시일로부터				거치기간 경	● 상혼		+. 🗖 0.7	- U+111+1
		신:		과후에는 매 (   지급일에 분할상	)개월마다 우측 상략 화한니다	완망법 신덕	1에 따르	가 애당 이사		I금균등 문일 I금고정 분힐		선능 문일상완
⑫상 환 방 법	□ 분할상환			162 1220	<u> </u>					리고 5 년 년 1원금지정 분		
			치기간		가다 우측 상환방법 선택(	게 따라 해당	당 이자:	지급일에 분		월 상환할 할	부원금 :	원)
		U	신청	할상환합니다.					으호 (마)	I경환 기일시상환힐	: 대 <del>충</del> 금 :	원)
	□ 한도거래	대출원	원금은 기	 다유로이 상환하되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t.			TE TOLE	"	
		□ 최.	초 이자	는 대출개시일부터	( )개월 이내에 지급하	고, 그 이후	이자는		산일 다	음날부터 (	)개월 이내어	지급합니다.
	개별거래				시 해당일 / 🗖 매월 (			지급합니다.				
③이자·할부금 지급시기및방법					지급일이 없는 경우 그달의 미 일하되, 고객님께서 별도 요청				수 있으며	1, 거치기간 중	에는 이자만 지	급합니다.
	한도거래	□ 최.	초 이자	는 대출개시(약정)	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					, -		
			자는 매		[단위로 지급합니다.	그냥Ю" ㄷㅇ	//÷r/ /c	1				
					실에 대한 서면통보를 생 사실의 서면통보 없이 대를				지급함이	네 동의합니다	ł.	
159약 정계좌	대출(한도)익	F정 계좌	번호 :									

E009-266(210×297) NCR지 (2024, 10 개정) K11



<sup>※</sup> 은행영업시간 마감이후 자동화기기 또는 전자금융매체를 통한 계좌입금분은 당일 중 상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기간 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만료일은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하되, 상환기일은 은행의 다음영업일로 이연되며, 이연기간의 이자는 약정이자로 부담하기로 합니다.

## 제2조 대출이자율의 적용 및 변동

- ① 제1조 제7항의 대출이자율 중 「MOR」 또는 「COFIX」를 기준으로 약정하는 대출의 경우, 대출을 실행하는 날의 「MOR」 또는 「COFIX」금리에 따라 고객 님의 대출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 적용할 대출이자율을 대출거래장에 표시하고, 개별통지는 생략합니다. 다만, 대출실행내역 통지서비스 를 신청한 고객에게는 신청한 통지방법에 따라 개별통지 합니다.
- 를 신청한 고객에게는 신청한 통지방법에 따라 개별통지 합니다.
  ② 제1조 제7항의 「MOR」과 「COFIX」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됩니다.
  1. 「MOR」: 「MOR」은 제1조 제7항에서 선택한 「금리재산정주기」 또는 고정금리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금리재산정주기」 또는 고정금리기간이 「3개월」인 경우 「MOR」은 「CD 91일물 유통수익률」, 「6개월」 이상인 경우 「MOR」은 「금리재산정주기」 또는 고정금리기간과 동일한 잔존만기를 가진 「AAA 등급 금융채유통수익률」을 각각 사용합니다. 현재 은행이 사용하는 「MOR」의 「CD 91일물 유통수익률」과 「금융채유통수익률」은 금융투자 협회가 고시하는 전주 최종영업일 전 영업일 종가입니다. 이 「MOR」의 적용기준은 금융환경의 변화(예: 91일물 CD 거래 없음)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영업점 게시판,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고시하기로 합니다.
  ※ CD 91일물 유통수익률이란 신용평가회사로부터 AAA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시중은행이 발행한 만기가 91일(만기가 80일 이상 100일 이내면 마기 이익은 보다이 CD의 방해소이류로서 기초자로 제출기과이 교육투자형회에 제출하 기초소인류을 기바으로 현회가 사출하 수인류인니다
  - 만기 91일로 본다)인 CD의 발행수익률로서 기초자료 제출기관이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한 기초수익률을 기반으로 협회가 산출한 수익률입니다.
  -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CD수익률 산출업무 중단시 비상계획

CD수익률 대체금리 선정 근거 3개월물 CD시가평가 기준수익률(AAA등급)의 채권평가 5사 평균금리 │ 현재 협회가 고시하는 CD수익률과 유사한 추이를 보이며, 채권전문 평가사가 산출·공시

- CD수익률이 산출되지 않아 대체금리로 전환하는 절차(예시): 사용기관은 홈페이지에 산출업무 중단 사유 및 내용, 기간 등을 공시하며, CD수익률을 대체할 수 있는 수익률 및 선정근거 등을 고객에게 안내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 CD수익률이 산출되지 않는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홈페이지 공시를 통해 CD수익률 산출중단 사실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2. 「COFIX」: 「COFIX」는 대출실행일 직전 영업일 전국은행연합회에 최종 고시되어 있는 「신규취급액기준 COFIX」, 「신잔액기준 COFIX」, 「산잔액기준 COFIX」 중 고객이 약정을 할 때 선택한 금리를 적용합니다. 이 「COFIX」의 적용기준은 금융환경의 변화(예 : COFIX 전국은행연합회 고시 없음) 등 불 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영업점 게시판,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고시하기로 합니다. ③ 대출실행일에 결정된 대출이자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변동됩니다.
- - 1. 제1조 제7항의 「변동금리」 또는 「혼합금리」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일 이내
    - 가. 「MOR」에 연동하는 대출: 대출실행일부터 매「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하는 날에 제2항에 의해 정해진 「MOR」과 제6조에 의해 정해진 우대금리 적용기준에 따라 재산정됩니다.
    - 나. 「COFIX」에 연동하는 대출: 대출실행일부터 매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하는 날 직전 영업일 전국은행연합회에 최종 고시되어 있는 「COFIX」와 제6조에 의해 정해진 우대금리 적용기준에 따라 재산정됩니다.
    - 다. 「수신(신탁)금리」에 연동하는 대출: 수신(신탁)금리가 변동된 날에 대출이자율이 변동됩니다. 다만, 복수예금을 담보로 한 대출은 이자납부 시점의 담보제공금액을 기준으로 재산출한 가중평균 수신금리에 따라 대출이자율이 변동되고, 또한 일부상환 등에 따라 채무자의 신청에 의해 담보예금별 담보제공금액이 변경 되는 경우 변경된 담보제공금액을 기준으로 재산출한 가중평균 수신금리에 따라 대출이자율이 변동됩니다. 라. 「기타」, 대출: 은행과 협약기관(또는 고객)이 별도 정한 바에 따라 이자율이 변동됩니다.
  - 2. 제1조 제7항의 「고정금리」, 「변동금리」, 「혼합금리」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일 이후: 기한연장 시점에 은행이 정한 기준을 따르기로 합니다.

## 제3조 대출금 상환방법

- ① 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 중에는 이자지급일에 이자만 납부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에 대출원금을 전액 상환합니다.
- ② 분할상환방식
  - 1.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을 상환합니다.
  - 2. 원금균등 분할상환: 매월 이자지급일에 이자 및 동일한 할부원금을 상환합니다.
  - 3. 할부금고정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최초 할부금을 만기까지 상환하고, 잔액은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 4. 고객원금지정 분할상환: 매월 이자지급일에 제1조 제12항의 상환방법에서 고객님이 지정한 할부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고, 잔액은 대출기간 만료 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 5. 혼합상환 : 제1조 제12항의 상환방법에서 고객님이 지정한 대출원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으로 상환합니다.

### 제4조 중도상환수수료

- ① 이 약정에 의한 대출기간 중 대출(한도)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한도해지 또는 한도감액)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하는 계산방법에 따라 은 행에 중도상환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②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한도해지 또는 한도감액)원금 × 수수료율 × (잔존일수 ÷ 대출기간)으로 합니다.
  - 1. 수수료율은 제1조 제10항에서 정한 율을 적용하기로 하며 대출기간 중에 담보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도 대출취급 당시의 수수료율에 따르기로 합니다.
  - 2. 잔존일수는 상환방법에 관계없이 제1조 제4항의 대출개시일로부터 대출기간 만료일까지의 일수에서 상환일까지의 경과일수를 차감하여 계산하되, 대 출개시일로부터 대출기간 만료일(기한연장 포함)까지의 일수가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째 되는 날을 대출기간 만료일로 합니다.
- 3. 대출기간은 대출실행방법에 관계없이 제1조 제4항의 대출개시일로부터 대출기간 만료일까지의 일수로 계산하되, 대출개시일로부터 대출기간 만료일 (기한연장 포함)까지의 일수가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째 되는 날을 대출기간 만료일로 합니다.
  ③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은행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합니다.
- - 1. 매월 납부하는 할부금에 포함된 대출원금

  - 2. 기한의 이익상실 등으로 은행이 대출금을 기일 전에 회수하는 경우 3.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10조(은행으로부터 상계)의 사유로 예금과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계하는 경우
  - 4. 잔여대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다만, 잔여대출기간은 기한 전 중도상환일 다음날부터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으로서 월단위 미만은 버립니다.

## 제5조 지연배상금 및 지연배상금률

- ① 이자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이 납입기일에 상환되지 않을 경우에는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실제 납입일 전일까지 납입할 금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 하기로 합니다.
- 이기도 합니다.
  ② 한도거래방식 대출의 경우 이자를 원금에 가산하는 것은 제1조 제3항에서 정한 대출(한도)금액 이내에서만 가능하며, 한도금액 부족으로 원금에 가산되지 못한 미납이자 및 한도초과 지급으로 인한 한도초과금액에 대하여 한도초과된 다음 날부터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③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자(제8조 제4항에 의한 미납이자 포함)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주택담보대출의 경우 3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등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출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만,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좌별 대출원금(약정금액 기준,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 기준)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대출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대출잔액에 대해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니다.
  ④ 제16조 제4항 및 제5항의 경우 상계 후의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그 다음 날 부터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지연배상금 산정 시 적용되는 지연배상금률은 제1조 제7항에 의해 결정된 대출이자율에 연체가산율 연3%를 더하여 결정되 며, 최고 지연배상금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15%. 다만, 제1조 제7항의 대출이자율이 최고 지연배상금률 이상인 경우 지연배상금률은 대출이자율에 연2%를 더한 율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 제6조 우대금리 및 적용기준

- ① 제1조 제7항의 대출이자율은 대출 실행시 아래 선택 항목의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이후에는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산정되어 우대금리를 적용하기로 확인합니다.
  - ※ 은행직원의 설명을 들으시고 해당적용 우대항목의 "□"내에 "∨"표시하시고, 우대조건 및 우대율을 기입합니다.

	우대항목	우대조건						
		□ 결제계좌가 당행인 KB국민카드 이용						
		최근 3개월 신용카드 이용실적 우대금리						
	□ 신용카드 이용실적 우대	( )만원이상 연( )%	연 ( )%					
		( )만원이상 연( )%						
		( )만원 이상 연 ( )%						
	□ 자동이체 실적우대 □ 당행에 아파트관리비, 지로, 금융결제원 CMS, 펌뱅킹 자동이체 ( )건 이상 이체 ※ <b>납부일이 월말 공휴일로 인해 익월 이체된 경우 익월 실적으로 인정</b>							
금리	□ 급여(연금)이체 관련 실적 우대	□ 「KB급여이체 신용대출」기본우대 □ 은행에 급여(연금)이체 실적이 확인되거나 당·타행을 통해						
항목 (1)		급여(연금)임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이체 실적 <b>건별 ( )만원 이상</b> 이 확인되는 경우						
(1)	□ 예금 관련 실적우대	□ 적립식 예금 □ 기타 ( ) 위 상품을 보유하고 예금 □ 잔액 □ 평잔 □ 월불입액 ( )만원 이상 유지실적이 확인되는 경우 □ ( )						
	□ 전자금융 관련 실적우대	□ KB스타뱅킹을 통해 입출금 통장으로 이체실적이 확인되는 경우 □ ( )	연 ( )%					
	□ 종합통장자동대출 한도소진율 우대	대출신규일로부터 1개월간 적용되며, 이후 한도소진율에 따라 매월 변경 적용	연 ( )%					
	□ 기타(추가약정 등에 따른)우대		연 ( )%					
금리	□ 기타 거래실적 등에 의한 우대(Ⅰ)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적용하되, 자동기한연장이 되는 경우 기한연장 후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적용	연()%					
우대 항목	□ 기타 거래실적 등에 의한 우대(Ⅱ)	최초 도래하는 대출기간 만료일까지만 적용	연()%					
(11)	□ 기타 거래실적 등에 의한 우대(Ⅲ)	대출실행(기한연장, 조건변경 등 포함)일로부터 ( )일 또는 ( )개월까지 적용	연 ( )%					

- ② 금리우대항목(I)에 의한 우대기간은 <u>대출신규일로부터 3개월간 적용하며, 이후(기한연장 포함) 1개월 단위로 금리우대 조건 이행 시 자동연장</u>됩니다. 만약, 매월 상기 금리우대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유지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대받은 금리가 자동으로 인상되며, 금리인상 후 상기 조건을 재이행하는 경 우에는 금리우대가 재적용됩니다. 인상된 금리변동내역은 신청하신 이자통지/금리변경내역 통지 서비스에 따라 본인에게 통보됩니다.
- ③ 우대금리 세부 적용기준 : **우대금리재산정시 아래 기준에 따라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항목별로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1. 우대항목별 기간에 따른 실적인정기준
------------------------

우대항목	적용기준
신용카드 이용실적 우대	대출실행일이 1일~10일인 경우 전전월말기준 최근 3개월 이용실적이 충족되는 경우 대출실행일이 11일~말일인 경우 전월말기준 최근 3개월 이용실적이 충족되는 경우 가. 실적산정기간 최종월의 익월 5일까지 KB국민카드社에 신용카드 이용전표(취소전표 포함)가 매입되지 않은 경우, 해당 이용금액(취소금액 포함)은 다음 금리산정 기간의 실적으로 반영됩니다. 나. 신용카드 이용금액에서 현금서비스금액, 연회비, 제 수수료, 연체료는 제외됩니다.
자동이체 실적 우대	대출실행일이 <b>1일~10일</b> 인 경우 <b>전전월말기준</b> 으로 <b>제1항에서 정한 실적기준 건수 이상</b> 이 충족되는 경우 대출실행일이 <b>11일~말일</b> 인 경우 <b>전월말기준</b> 으로 <b>제1항에서 정한 실적기준 건수 이상</b> 이 충족되는 경우
급여(연금)이체 관련 실적 우대	우대금리 재산정일 <b>전월말기준 최근 3개월간 2회 이상</b> 본인 계좌로 <b>제1항에서 정한 실적기준금액 이상</b> 급여(연금) 이체 실적이 확인되는 경우
예금 관련 실적 우대	우대금리 재산정일 <b>전일 기준</b> 으로 <b>제1항에서 정한 실적기준금액 이상 유지 실적</b> 이 확인되는 경우
전자금융 관련 실적 우대	우대금리 재산정일 <b>전일 기준</b> 으로 최근 <b>1개월 이내</b> 송금실적이 확인되는 경우

### 2. 기타 세부적용기준

- 가. 신용카드 이용실적 우대: 결제계좌가 당행인「KB국민카드」社의 개인신용카드 이용실적이 제1항에서 정한 실적기준 금액이 있는 경우 최근 3개월 카드이용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합니다.
- 나. 자동이체 실적우대: 본인 계좌로 **아파트관리비, 지로, 금융결제원CMS, 펌 뱅킹 자동이체** 출금실적이 있는 경우에 인정되며, **계좌간 자동이체는** 제외됩니다.
- 다. 급여(연금)이체 관련 실적우대
  - 1) 급여(연금)임을 알 수 있는 방법
    - 지정(등록)된 급여(연금)일자(전후 1영업일 포함 3영업일)에 제1항에서 정한 실적기준금액 이상 급여이체실적이 있는 경우[급여(연금)이체일자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은행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고 변경 요청하여야 합니다]
    - 적요에 월급/급여/수당/급료/상여/보너스/봉급/연금/성과급/보로금/임금/salary/bonus/pay 라고 표시되어 있는 경우 ※ 당행 본인 계좌에서 이체 건은 위의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제외됩니다.
  - 2)「KB급여이체 신용대출」기본 우대의 경우 '제3항 1의 급여(연금)이체'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

E009-266(210×297) NCR지 (2024. 10 개정) K11



라. 종합통장자동대출 한도소진율 우대: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해 산출된 은행신용등급(이하 '신용등급') 및 종합통장자동대출 한도소진율에 따라 매월 우대금리를 변경 적용합니다.

금리산출일 기준 직전 1개월간의 평균 한도소진율	우대금리				
급역전철을 기준 역한 1개월전의 경관 현고표전철	신용등급 1~6등급	신 <del>용등</del> 급 7등급 이하			
한도소진율 25%이상 40% 미만	연 0.10%	연 0.05%			
한도소진율 40%이상 50% 미만	연 0.20%	연 0.10%			
한도소진율 50%이상 80% 미만	연 0.30%	연 0.15%			
한도소진율 80%이상	연 0.40%	연 0.20%			

- 1) 종합통장자동대출 한도소진율에 의한 우대금리는 은행에서 정한 신용대출에 한하여 적용합니다.(일부 협약대출 적용제외)
- 2) 종합통장자동대출 한도소진율에 의한 우대금리는 매월 산출하며, 금리산출일 기준 직전 1개월간의 평균 한도소진율 ["매일 한도소진율(대출사용금액÷대출약정금액)합÷금리산출일 기준 직전 1개월간 일수"로 계산하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사]을 산정하여 다음 1개월간 신용등급별로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
- 3) 한도소진율산정 후 요구불통장에 대한 정정거래 혹은 취소거래가 있는 경우에도, 이미 계산된 한도소진율 및 우대금리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 4) 종합통장자동대출 계좌가 미수채권, 특수채권 등에 편입될 경우 종합통장자동대출 한도소진율에 의한 우대금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마. 기타 거래실적 등에 의한 우대( I ~III) : 은행 거래실적이 우수하거나 거래실적 증대가 예상되는 경우 제1항에서 정한 우대기간까지 적용합니다.

#### 제7조 담보, 보험 및 추가담보 제공

- ① 본인은 은행의 대출을 받아 건설 또는 구입하는 시설물과 건물(대출 받은 토지 위에 건설하는 시설물, 건물 포함)은 건설도중이나 건설완료 후에도 은행의 승인 없이 그 소유권 이전행위, 저당권, 지상권(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을 세우거나 수목을 심어 소유하려는 목적으로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전세권, 가등기, 임차권 등 각종 권리의 설정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제3자로부터 은행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기로 하며, 동 시설물과 건물은 토지와 함께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기로하고, 은행이 요청하는 경우 은행이 동의하는 종류와 금액의 보험에 가입한 후 그 보험금 청구권에 은행을 위하여 질권설정하기로 합니다.
- ② 본인이 담보로 제공할 토지에 대하여 지적공부 및 등기부정리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토지의 지적정리 완료 후에도 제1항을 준용하기로 합니다.
- ③ 본인이 담보로 제공한 담보물의 담보가치가 감소(후취담보취득을 할 때 포함)한 경우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6조(담보의제공)에 따르기로 합니다.

#### 제8조 한도거래방식 대출 대출금 지급 방법 등

- ① 이 약정에 의한 채무가 있는 때에는 종합통장기본계좌 및 가계당좌예금 (이하 "모계좌"라 합니다)에 입금된 자금(증권류의 금액은 결제될 때까지 이 자금에서 제외하며, 입금된 증권 등은 이 약정에 의한 채무의 담보로서 은행에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은 자동적으로 대출금 변제에 충당하기로 합니다.
- ② 모계좌에 대해 그 잔액을 초과해서 지급요구하거나 정기적으로 지급금 및 각종 요금 등의 자동납부 요구가 있는 때에는 모계좌를 통해 대출금을 지급하거나 자동납부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③ 은행은 어음•수표대금의 지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더라도, 제1조 제3항의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은 초과된 금액을 곧 갚기로 합니다.
- ④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모계좌에서 인출하거나 제1조 제3항의 한도금액 이내에서만 대출금에 더하기로 하며, 한도금액 부족으로 원금에 가산되지 못한 미납이자는 곧 갚기로 합니다.
- ⑤ 원금에 가산된 이자가 한도금액에 도달하여 한도금액의 부족으로 이자의 일부라도 원금에 가산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족금액을 곧 변제하거나 해당 모 계좌에 변제를 위하여 입금하기로 하며, 모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미납이자 및 지연배상금 변제에 최우선적으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 제9조 대출금 상환 또는 채무인수 의무

- ① 대출을 받은 후 해당 시설물과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은행이 인정하는 양수인으로 하여금 채무를 인수하게 하거나 대출금 전액을 상환합니다.
- ② 이 약정에 의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은행의 요구에 의하여 곧 대출금 전액을 상환합니다.

#### 제10조 채무인수 불허 특약

한도거래방식 대출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에도 이 대출은 부동산 양수인에게 인계되지 아니합니다.

## 제11조 가계당좌예금을 모계좌로 하는 대출특약

- ① 모계좌가 가계당좌예금인 종합통장자동대출 및 가계당좌대출의 경우, 이 약정에 의하여 본인이 발행한 수표를 지급함으로써 은행에 대해 구상채무[채무자가 돈을 대신 갚아준 사람(또는 기관)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지게된 때에는, 이를 대출금 채무로 삼아 이 약정에 따라 갚기로 합니다.
- ② 모계좌가 가계당좌예금인 종합통장자동대출 및 가계당좌대출의 경우, 은행은 수표의 지급거절에 따른 본인의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예상되는 등 필요한 경우 본인이 대출기간 만료일전에 발행된 수표를 대출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지급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생긴 대출금에 대하여도 이 약정이 적용됩니다.

#### 제12조 기한연장

- ① 대출기간이 만료된 때 은행이 정한 방법에 따라 기한연장되거나, 연장에 따른 대출이자율이 변경된 때에도 계속하여 이 약정에 따르기로 합니다.
- ②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자동연장조건에 일치할 경우, 은행은 "기한연장 및 금리변경"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서 등을 받지 아니하고 은행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한연장 및 금리변경 처리하기로 하며, 은행은 기한연장된 대출금의 이자율과 새로운 대출기간 만료일 등을 연장 후 10일 이내에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기로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변경된 이자율에 이의가 있을 때는 변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지일 까지는 변경 전 대출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하고 해당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은행에 대한 상환채무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지연배상금률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또한 동 기한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제13조 대출실행 중단

은행은 대출계약 체결 후 대출실행 전에 차주에게 대출 증가, 연체 발생, 신용등급 하락 등 차주의 신용위험, 상환능력이 악화되거나 차주가 제공한 정보의 내용이 달라져 대출 실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대출을 실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14조 인지세의 부담

- ① 이 약정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는 각 50%씩 본인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본인이 부담하기로 한 인지세를 은행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4조에 준하여 갚기로 합니다.

#### 제15조 질권의 목적인 예금 등의 표시

(단위 : 원)

종별	증서번호 또는 계좌번호	명의인 또는 위탁자 수익자	약정일까지 입금누계액	담보제 <del>공금</del> 액 (대 <del>출금</del> 액의 110%)	신규일자	만기일자

#### 제16조 담보권 설정

- ① 이 약정에 의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15조에 표시한 예금 등에 질권을 설정하고 은행 앞으로 그 증서(통장)의 인도를 마쳤습니다.
- ② 제1항에 의한 질권의 효력은 원금•수익권(이 계약 이후에 적립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과 이에 부수하는 이자•수익의 수익권, 특별장려금, 법정장려금 등에 미칩니다.
- ③ 예금 등이 기한연장•개서(새로씀)•갱신•분할•병합•증액•감액 또는 이자가 원금에 가산된 경우에도 그 위에 질권의 효력이 미침을 승인하며, 그 목적인 신탁이 기간연장되거나 연체로 말미암아 자동연장처리된 경우에 있어서도 그에 대한 수익권 위에 효력이 미침을 승인합니다.
- ④ 은행은 제1항에 의한 질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의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의 채권과 제15조에 표시한 예금 등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 ⑤ 적립식예금 관련 대출인 경우 은행은 대출금이자 및 제1항의 질권의 목적인 관련 예금 등의 월적립금이 6개월(적립식신탁대출의 경우 4회)이상 납입지체된 때에는 대출기간 만료일 이전이더라도 통지에 의해 담보예금 등과 대출금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 제17조 한도거래방식 대출 대출금 인출 제한

① 은행은 채무자에게 금융기관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정해진 신용거래정보 중 연체정보, 다	위변제(채무자를 대신하여 이
해관계인이나 제3자가 채무를 갚아주는 행위) · 대지급(채무자가 기일 내에 돈을 갚지 못	한 경우 지급보증을 한 은행(또
는 정부)에서 대신 지급하여 주는 것)정보, 부도정보,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공	<del>}공</del> 기록 정보가 등록된 때에는
제1조 제3항의 대출(한도)금액에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금 인출을 제한할 수 있	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그 사
실을 채무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본인:** (서명 또는 인)

② 제1항에서 정한 사유가 해결되어 없어져서 정상적 여신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은행은 인출 제한을 해제하기로 합니다.

## 제18조 대출금 수령 위임

본인이 은행으로부터 이 약정서에 의해 대출을 받음에 있어 동 대출금(부대비용을 정산하지 않은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의 수령할 권한을 제19조와 같이 위임하며, 이에 따른 분쟁 등이 있을 경우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본인이 책임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 제19조 개별거래방식 대출 대출금 수령계좌 지정 · 수령위임 표시

대출금수령계좌	계좌번호 :
	예금주 :
위임자(채무자)	(서명 또는 인)

### 제20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의 적용

본 약정서에 추가하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이 적용됩니다. 추후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바에 따릅니다.

#### 제21조 기타특약사항

-1-17-710		
본 인:	(서명 또는 인)	
	(10-2-2)	

------[내울거래악성 급

# [개별거래방식 대출 자동이체 신청 (□ 신청 □ 미신청)]

본인은 대출신청을 함에 있어 아래의 계좌간 자동이체약관을 승인하며, 아래와 같이 자동이체를 신청합니다.

연결계좌번호		이	체	일	매월일
이 체 한 도	□ 대출한도 이내(신청이 없는 경우 포함) □ 예금잔액 이내	비	용 처	리	□ 제 비용은 출금하여 처리해 주십시오.

E009-266(210×297) NCR지 (2024, 10 개정) K11



## 계좌간 자동이체 약관

#### 제1조 [자동이체 방법]

- ① 은행은 거래처의 자동이체 신청에 따라 지정일에 통장, 수표, 지급청구서 없이 출금계좌에서 이체금액(영업시간 이내 입금분에 한합니다)을 입금 계좌로 이체합니다. 다만, 입금계좌가 퇴직연금인 경우에는 18시 전 입금분에 한해 입금계좌로 이체합니다.
- ② 지정일이 영업일이 아닌 때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체합니다. 다만, 정기예금 및 신탁 월지급 이자는 그 전 영업일에 이체합니다.
- ③ 통장자동대출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출금액을 포함하여 이체합니다. 다만, 고객이 따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금잔액 이내에서만 이체 할 수 있습니다.

#### 제2조 [지급자금 부족 때의 처리]

- ① 이체 지정일에 출금계좌의 지급자금이 이체금액에 미달하면 부족자금이 채워지는 날에 이체(영업시간 이내 입금분에 한합니다)합니다. 다만, 이체주기를 매 영업일로 정하는 경우 해당 이체 지정일에 출금 계좌의 지급자금이 이체금액에 미달하면 부족자금이 채워지는 날에도 이체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금계좌가 대출계좌, 집합투자기구(펀드), 퇴직연금인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제3조 [여러 건의 이체처리]

같은 날에 이체대상이 여러 건 있는 때 이체처리순서는 은행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제4조 [증권의 부도]

거래처의 출금계좌에 입금한 자기앞수표, 가계수표 등 증권이 지급 거절 되었을 때는 자동이체 처리된 금액을 취소합니다.

## 제5조 [신청내용의 변경, 해지신고]

거래처가 신청내용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는 이체지정일 전 영업 일까지 은행에 신고해야 합니다.

#### 제6조 [이체일 및 이체금액 미지정 때 처리]

거래처가 부담하여야 할 수수료, 채무 등 이체대상만을 지정하고 이체일 및 금액에 대한 지정 없이 자동이체를 신청한 때는 은행은 그 대상거래가 발생했을 때 이체합니다.

#### 제7조 [은행의 자동이체 임의해지]

전월 말일 기준으로 5개월 연속 미이체 시 SMS 등과 같은 전자적 매체로 통지하며 6개월이상 이체되지 않은 때에는 자동이체 등록을 해지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입금계좌가 퇴직연금인 경우 6개월이상 이체되지 않더라도 등록을 해지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제8조 [외화계좌 자동이체 적용환율]

- ① 원화계좌에서 외화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이체처리일 이체시점의 대고객 전신환 매도율을 적용하여 환산합니다.
- ② 제1항의 원화계좌는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을 말하며, 외화계좌는 외화예금, 외화로 거래하는 집합투자기구(펀드) 또는 외국집합투자기구 (역외펀드) 계좌를 말합니다.

#### 제9조 [집합투자기구(펀드) 자동이체 처리]

- ① 입금계좌가 집합투자기구(펀드) 계좌인 경우 지정일에 출금계좌에서 이체금액을 출금하여 별도의 신탁계정에 예치 후, 집합투자기구(펀드)별 규약에서 정한 판매가격(매입기준가격)적용일에 입금계좌로이체합니다. 다만, 외국집합투자기구(역외펀드)에 투자하기 위하여해외로 송금하는 경우 별도의 신탁계정에 예치하지 않고 입금계좌로이체할 수 있습니다.
- ② 이체지정일에 출금계좌의 지급자금이 이체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자동이체 처리가 불가합니다.
- ③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가 지급계좌일 경우에는 이체금액을 별도로 신탁계정에 예치하지 않고 이체금액만큼 지급정지되며, 각각의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매입기준가격 적용일에 출금하여 입금계 좌로 이체합니다.

#### 제10조 [대출계좌 자동이체 처리]

① 이체 지정일에 출금계좌로 입금되는 금액은 당일 중 지정된 대출계좌

로 이체합니다.

- ② 이체 지정일에 출금계좌의 출금가능금액이 이체금액에 부족할 경우 약정납입일 전일까지는 부족한 금액이 채워지는 날 이체됩니다. 다만, 약정납입일 부터는 영업시간 마감 이후 상환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1. 일시상환은 출금계좌의 출금가능금액 이내에서 약정이자를 일단 위로 이체합니다.
  - 2. 분할상환은 출금계좌의 출금가능금액이 1천원 이상일 경우 할부 금을 원단위로 이체합니다.
  -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협약대출, 정책자금, 파생연계상품 등은 제2조 본문에 따라 처리합니다.
- ③ 납부할 할부금의 일부 금액이이체되는 경우 연체기준일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 제11조 [퇴직연금 자동이체 처리]

이체지정일에 출금계좌의 출금가능금액이 이체금액에 부족한 경우 이 체지정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부족한 금액이 채워지는 날에 이체됩 니다.

#### 제12조 [계좌이동서비스]

- ① 계좌간자동이체는 계좌이동서비스 대상이며, 계좌이동서비스 이용약 관을 준용합니다.
- ② 은행은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www.payinfo.or.kr)에 자동이체 등록정보를 제공하여 조회 및 해지, 출금계좌 변경신청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 ③ 거래처는 은행 지점,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www.payinfo.or.kr), 애플리케이션에서 계좌이동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④ 거래처가 은행 지점,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www.payinfo.or.kr), 애플리케이션에서 자동이체 출금계 좌를 당행계좌로 변경 신청할 경우 다른 금융기관 출금계좌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이체 해지 후, 당행 출금계좌로 신규 등록 됩니다.

#### 제13조 [약관의 변경]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약관의 변경 조항을 따릅니다.

## 제14조 [준용]

- ① 계좌간자동이체 거래에는 이 약관 외에도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이 적용되며, 규정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이 약관의 규정이 우선합니다.
- ②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금거래 기본약관,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관련예금 및 신탁약관을 준용 합니다.

## 부 칙

(시행일) 제9조 집합투자기구(펀드) 자동이체 처리는 2010년 9월 13일 부터 시행합니다.

## 부 칙

(시행일) 제10조 대출계좌 자동이체 처리는 2011년 1월 7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 칙

(시행일) 제7조 은행의 자동이체 임의해지는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별첨] 자동이체 출금우선순위

- 1. 영업개시전 : 정기예금 이자지급
- 2. 영업시간중: 타행자동이체, 대출이자, 신탁, 요구불이체, 선일자 등 영업점 직접처리분
- 3. 영업시간후: 다음 그룹 순서에 의해 처리되며, 그룹내 처리 순서는 없음.
  - 1그룹: 대출이자, KB카드대금, 영업점 개별 처리건(APT관리비 등)
  - 2그룹: 대외청구자금(VAN, CMS, GIRO 등)
  - 3그룹: 기타 수신 계좌이체, 적립식 예금이체(신탁포함), 요구불간 이체 등
- ※ 납부자자동이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은행은 본인에게 이 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과 이 약정서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대	출거	래약정사	(가계용)		본인확	인자 팀 원	! 팀 장	부점장	
				자:20 .	)						
		1. 본인은			. <i>' '</i> 은행")과 아래의 조건에 따려	라 대출거래를 함에	 I 있어 은행여신가		 계용) 및 이 약정서	사본을 확실	
A 01 01 TI		히수	령하고, 주	:요 내용에 대하여 경	S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	겼습니다.					
수입인지		Z. 본인원   해자	를 개인(신 세히 설명	용)성모 소외 · 수십 듣고 수령하였습니	·이용·제공 동의서를 이 다.	애야고 동의야버,	개인(신용)성모 =	P십·이용·제공	5에 내안 고객권대	기안내문에 판	
			리대출은	대출기간 중 대출이자	다. 율이 인상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재무적 부담이	증가될 수 있다는 내	내용에 대하여 충			
		본인							(서명 :	또는 인) 	
		주소									
제1조 거래조건 (	거래방식	이수개	로 되어 🤉	있는 경우 은행 직	원의 설명을 듣고 해당되	i는 "□" 내에 " \	/ " 표시합니다.)				
① 대출과목(종류)						②거	네 래 구 분	□개발	별거래 □한도기	거래	
③ 대출한도금액	금					원 (₩				)	
	<b>2</b> 0	년	월		H출실행일을 개시일로 하						
⑤대 출 기 간	(	<u>)</u> 년 (	)	개월 ※대출기간	만료일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	<sup>2</sup> 기재   <b>⑥ 대</b>	출기간만료일	20	년 월	일	
	<b>□ 고정</b> : [은행여/	<b>금리</b> 신거래기본	- LII X-	7171 UL=0171TI	□면( )%		MOR +	· · · · · · · · · · · · · · · · · · ·	\0/		
	약관(가격	11용) 제3조	네팔	기간 만료일까지	[□ 신규취급액기준 ※ 위의 금리는 제6조의 우	□ 신잔액기준 대그리 여 (	)%가 적용된 금리	- COFIX + (	)%		
	세28 세	1호 선택]			MOR + ( )%			)+(	)% 금리	 재산정주기	
	□변동	금리		기본금리	[ 집 신규취급액기준	□신잔액기준	<b></b> \ □ 잔액기준	, ,	)% : 매		
		신거래기본   용) 제3조			□ 수신(신탁)금리 + (	)%	□기타:(		,	)	
	제2항 제2			우대금리	대출실행시 적용 우대금				에 따라 재산정되어	<sup>†</sup> 적용됩니다.	
l ⑦ 대 출 이 자 율				최종금리 1. 고정기간	「기본금리 - [우대금리 □ 연 ( )%	( )%]」로 결	를정된 금리가 적성 ■ MOD +				
	□ 혼합금리 [은행여신거리 약관(가계용)		7111	대출개시일로부터		ᅟᅟᅟᅟᅵᅜᄱᄓᄌ	□ MOR +		\0/		
				기본 금리	( )개월간	[  신규취급액기준	□신잔액기준	<b>□</b> 산액기군	E] COFIX + (	)%	케니저 국 기
		11용) 제3조		2. 변동기간 고정기간 종료 이후	☐ MOR + ( )% [☐ 신규취급액기준	□신잔액기준	<b></b> 자애기주		금디 )% : 매	재산정주기 ( )개월	
	제2항 제	2호 선택]		우대금리	대출실행시 적용 우대금리				<i></i>		
				최종금리	「기본금리 – [우대금리		멸정된 금리가 적 <del>인</del>				
	□기타		· · · / 🗖 c	NEIOLOISIUL <b>E</b>		0131111) 71001111				1011 55171 7104	
⑧이 자 및 지 연	개별거	ᅦ래 ᅵ이스	I는(Ⅱ ) √금륙이 2	일단위 일계산, 🍱 🤅 적용 됩니다 다만	월단위 월계산, □ 월단위 일단위 일계산 및 월단위	일계산), 시연배(   익계사은 1년옥	상금은 일단위로 365익(유년은 3	계산하며, 세5. 66일)로 계산호	소에서 성안 망ፒ 맛니다	]에 따라 시언	
배상금계산방법	한도거				<u>르는 // 듣    는 // 르는 //</u> 계산하고, 제5조에서 정한			·		로 계산합니다.	
⑨이자율변경시	이자율 박	 변경 시 변	경기준일	로부터 변경됩니다	h. 다만, 분할상환대출은 t	 변경기준일 이후 최	최초 도래하는 약	정난인일 이후	변경 적용됩니다	:	
적용기준					)%×(잔존일수÷대출기간						
⑩ 중도상환수수료	□해당	없음		'I타 (					)		
	   개별거			일에 전액 실행합니 호칭다비치드 드 .	l다. 은행이 정한 기준에 의해	브하 시해하니다					
⑪대출실행방법	/II 2/ I				는 이간 중에 동 대출금:			틴 잔여 대출금:	의 분할 실행이 경	중단됩니다.	
	한도거			가 있는 대로 실행협							
	□일시	<b>상환</b> 대출	들기간 중(	т .	나고, 대출기간 만료일에 다			11+1000			
			거치기간	대출개시일로부터   과후에는 매 (	터 ( )년 ( )개 )개월마다 우측 상	월동안 거치하고, 화방법 선택에 따			부핰상화 🗖 워근-	규등 분학상화	
			신청	지급일에 분할상				]할부금고정 분	분할상환	20 6206	
⑫상 환 방 법	□분할		-1+1-1-1	nii / \aii 0ii				고객원금지정 (매월 상환할		01/	
			거치기간 기신청	배 ( )개월!   할상환합니다.	마다 우측 상환방법 선택	에 따라 애당 이스		(메걸 경환일 ]혼합상환	일구전급 ·	원)	
								(만기일시상환	한할 대출금 :	원)	
	□ 한도:		_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 비즈 이지레니	01 5101 1451	/ \7!!!!!	11 7 1 7 2 1 1 1 1 1 1	
	711647			·는 대출개시일부터 부금은 [ <b>ा</b> 대출개	( )개월 이내에 지급혀 시 해당일 / <b>□</b> 매월 (	야고, 그 이우 이사( )일(납부일)]에		일 나음일부터	( )개월 이내어	∥ 지급합니다.	
⑬이자 · 할부금	개별거	141   <sub>**</sub> c	기자 · 할부	금 지급일 해당월에 기	지급일이 없는 경우 그달의 대	마지막 날을 지급일로	로 합니다.				
지급시기및방법					로 하되, 고객님께서 별도 요청 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						
	한도거		최조 이시 이자는 매		일우리 1개월 이내에 시합 !단위로 지급합니다.	ョ어프, 역우의 역/	시는 매결 의소 년	11호극경 예정될	e에 전단취노 시E	3합역역.	
		취급 및 상	환기일을	연장 할 때 실행시	실에 대한 서면통보를 상						
				<u> 납입지체 할 때 동</u>	사실의 서면통보 없이 대	줄금잔액에 대한 기	지연배상금을 지	급함에 동의합니	<u> </u>		
⑮약 정계좌	대출(한.	도)약정 계	좌번호 :								

<sup>※</sup> 은행영업시간 마감이후 자동화기기 또는 전자금융매체를 통한 계좌입금분은 당일 중 상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기간 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만료일은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하되, 상환기일은 은행의 다음영업일로 이연되며, 이연기간의 이자는 약정이자로 부담하기로 합니다.

## 제2조 대출이자율의 적용 및 변동

- ① 제1조 제7항의 대출이자율 중 「MOR」 또는 「COFIX」를 기준으로 약정하는 대출의 경우, 대출을 실행하는 날의 「MOR」 또는 「COFIX」금리에 따라 고객 님의 대출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 적용할 대출이자율을 대출거래장에 표시하고, 개별통지는 생략합니다. 다만, 대출실행내역 통지서비스 를 신청한 고객에게는 신청한 통지방법에 따라 개별통지 합니다.
- 를 신청한 고객에게는 신청한 통지방법에 따라 개별통지 합니다.
  ② 제1조 제7항의 「MOR」과 「COFIX」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됩니다.
  1. 「MOR」: 「MOR」은 제1조 제7항에서 선택한 「금리재산정주기」 또는 고정금리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금리재산정주기」 또는 고정금리기간이 「3개월」인 경우 「MOR」은 「CD 91일물 유통수익률」, 「6개월」 이상인 경우 「MOR」은 「금리재산정주기」 또는 고정금리기간과 동일한 잔존만기를 가진 「AAA 등급 금융채유통수익률」을 각각 사용합니다. 현재 은행이 사용하는 「MOR」의 「CD 91일물 유통수익률」과 「금융채유통수익률」은 금융투자 협회가 고시하는 전주 최종영업일 전 영업일 종가입니다. 이 「MOR」의 적용기준은 금융환경의 변화(예: 91일물 CD 거래 없음)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영업점 게시판,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고시하기로 합니다.
  ※ CD 91일물 유통수익률이란 신용평가회사로부터 AAA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시중은행이 발행한 만기가 91일(만기가 80일 이상 100일 이내면 마기 이익은 보다이 CD의 방해소이류로서 기초자로 제출기과이 교육투자형회에 제출하 기초소인류을 기바으로 현회가 사출하 수인류인니다
  - 만기 91일로 본다)인 CD의 발행수익률로서 기초자료 제출기관이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한 기초수익률을 기반으로 협회가 산출한 수익률입니다.
  -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CD수익률 산출업무 중단시 비상계획

CD수익률 대체금리 선정 근거 3개월물 CD시가평가 기준수익률(AAA등급)의 채권평가 5사 평균금리 │ 현재 협회가 고시하는 CD수익률과 유사한 추이를 보이며, 채권전문 평가사가 산출·공시

- CD수익률이 산출되지 않아 대체금리로 전환하는 절차(예시): 사용기관은 홈페이지에 산출업무 중단 사유 및 내용, 기간 등을 공시하며, CD수익률을 대체할 수 있는 수익률 및 선정근거 등을 고객에게 안내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 CD수익률이 산출되지 않는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홈페이지 공시를 통해 CD수익률 산출중단 사실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2. 「COFIX」: 「COFIX」는 대출실행일 직전 영업일 전국은행연합회에 최종 고시되어 있는 「신규취급액기준 COFIX」, 「신잔액기준 COFIX」, 「산잔액기준 COFIX」 중 고객이 약정을 할 때 선택한 금리를 적용합니다. 이 「COFIX」의 적용기준은 금융환경의 변화(예 : COFIX 전국은행연합회 고시 없음) 등 불 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영업점 게시판,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고시하기로 합니다. ③ 대출실행일에 결정된 대출이자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변동됩니다.
- - 1. 제1조 제7항의 「변동금리」 또는 「혼합금리」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일 이내
    - 가. 「MOR」에 연동하는 대출: 대출실행일부터 매「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하는 날에 제2항에 의해 정해진 「MOR」과 제6조에 의해 정해진 우대금리 적용기준에 따라 재산정됩니다.
    - 나. 「COFIX」에 연동하는 대출: 대출실행일부터 매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하는 날 직전 영업일 전국은행연합회에 최종 고시되어 있는 「COFIX」와 제6조에 의해 정해진 우대금리 적용기준에 따라 재산정됩니다.
    - 다. 「수신(신탁)금리」에 연동하는 대출: 수신(신탁)금리가 변동된 날에 대출이자율이 변동됩니다. 다만, 복수예금을 담보로 한 대출은 이자납부 시점의 담보제공금액을 기준으로 재산출한 가중평균 수신금리에 따라 대출이자율이 변동되고, 또한 일부상환 등에 따라 채무자의 신청에 의해 담보예금별 담보제공금액이 변경 되는 경우 변경된 담보제공금액을 기준으로 재산출한 가중평균 수신금리에 따라 대출이자율이 변동됩니다. 라. 「기타」, 대출: 은행과 협약기관(또는 고객)이 별도 정한 바에 따라 이자율이 변동됩니다.
  - 2. 제1조 제7항의 「고정금리」, 「변동금리」, 「혼합금리」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일 이후: 기한연장 시점에 은행이 정한 기준을 따르기로 합니다.

## 제3조 대출금 상환방법

- ① 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 중에는 이자지급일에 이자만 납부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에 대출원금을 전액 상환합니다.
- ② 분할상환방식
  - 1.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을 상환합니다.
  - 2. 원금균등 분할상환: 매월 이자지급일에 이자 및 동일한 할부원금을 상환합니다.
  - 3. 할부금고정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최초 할부금을 만기까지 상환하고, 잔액은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 4. 고객원금지정 분할상환: 매월 이자지급일에 제1조 제12항의 상환방법에서 고객님이 지정한 할부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고, 잔액은 대출기간 만료 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 5. 혼합상환 : 제1조 제12항의 상환방법에서 고객님이 지정한 대출원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으로 상환합니다.

### 제4조 중도상환수수료

- ① 이 약정에 의한 대출기간 중 대출(한도)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한도해지 또는 한도감액)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하는 계산방법에 따라 은 행에 중도상환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②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한도해지 또는 한도감액)원금 × 수수료율 × (잔존일수 ÷ 대출기간)으로 합니다.
  - 1. 수수료율은 제1조 제10항에서 정한 율을 적용하기로 하며 대출기간 중에 담보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도 대출취급 당시의 수수료율에 따르기로 합니다.
  - 2. 잔존일수는 상환방법에 관계없이 제1조 제4항의 대출개시일로부터 대출기간 만료일까지의 일수에서 상환일까지의 경과일수를 차감하여 계산하되, 대 출개시일로부터 대출기간 만료일(기한연장 포함)까지의 일수가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째 되는 날을 대출기간 만료일로 합니다.
- 3. 대출기간은 대출실행방법에 관계없이 제1조 제4항의 대출개시일로부터 대출기간 만료일까지의 일수로 계산하되, 대출개시일로부터 대출기간 만료일 (기한연장 포함)까지의 일수가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째 되는 날을 대출기간 만료일로 합니다.
  ③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은행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합니다.
- - 1. 매월 납부하는 할부금에 포함된 대출원금

  - 2. 기한의 이익상실 등으로 은행이 대출금을 기일 전에 회수하는 경우 3.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10조(은행으로부터 상계)의 사유로 예금과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계하는 경우
  - 4. 잔여대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다만, 잔여대출기간은 기한 전 중도상환일 다음날부터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으로서 월단위 미만은 버립니다.

## 제5조 지연배상금 및 지연배상금률

- ① 이자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이 납입기일에 상환되지 않을 경우에는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실제 납입일 전일까지 납입할 금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 하기로 합니다.
- 이기도 합니다.
  ② 한도거래방식 대출의 경우 이자를 원금에 가산하는 것은 제1조 제3항에서 정한 대출(한도)금액 이내에서만 가능하며, 한도금액 부족으로 원금에 가산되지 못한 미납이자 및 한도초과 지급으로 인한 한도초과금액에 대하여 한도초과된 다음 날부터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③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자(제8조 제4항에 의한 미납이자 포함)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주택담보대출의 경우 3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등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출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만,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좌별 대출원금(약정금액 기준,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 기준)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대출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대출잔액에 대해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니다.
  ④ 제16조 제4항 및 제5항의 경우 상계 후의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그 다음 날 부터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지연배상금 산정 시 적용되는 지연배상금률은 제1조 제7항에 의해 결정된 대출이자율에 연체가산율 연3%를 더하여 결정되 며, 최고 지연배상금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15%. 다만, 제1조 제7항의 대출이자율이 최고 지연배상금률 이상인 경우 지연배상금률은 대출이자율에 연2%를 더한 율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 제6조 우대금리 및 적용기준

- ① 제1조 제7항의 대출이자율은 대출 실행시 아래 선택 항목의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이후에는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산정되어 우대금리를 적용하기로 확인합니다.
  - ※ 은행직원의 설명을 들으시고 해당적용 우대항목의 "□"내에 "∨"표시하시고, 우대조건 및 우대율을 기입합니다.

	우대항목	우대조건						
		□ 결제계좌가 당행인 KB국민카드 이용						
		최근 3개월 신용카드 이용실적 우대금리						
	□ 신용카드 이용실적 우대	( )만원 이상 연 ( )%	연()%	%				
		( )만원 이상 연 ( )%						
		( )만원 이상 연 ( )%						
	□ 자동이체 실적우대	□ 당행에 아파트관리비, 지로, 금융결제원 CMS, 펌뱅킹 자동이체 ( )건이상 이체 ※ <b>납부일이 월말 공휴일로 인해 익월 이체된 경우 익월 실적으로 인정</b>	연()%	%				
금리 우대 항목	우대 🗀 급여(연금)이제 판단 실착 우대 💮 급여(연금)임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이체 실적 <b>건별 ( )만원 이상</b> 이 확인되는 경우							
(1)	□ 예금 관련 실적우대	□ 적립식 예금 □ 기타 ( )위 상품을 보유하고 예금 □ 잔액 □ 평잔 □ 월불입액 ( )만원 이상 유지실적이 확인되는 경우 □ ( )	연( )%	%				
	□ 전자금융 관련 실적우대	□ KB스타뱅킹을 통해 입출금 통장으로 이체실적이 확인되는 경우 □ ( )						
	□ 종합통장자동대출 한도소진율 우대	대출신규일로부터 1개월간 적용되며, 이후 한도소진율에 따라 매월 변경 적용	연()%	%				
	□기타(추가약정 등에 따른)우대		연 ( )%	%				
금리	□ 기타 거래실적 등에 의한 우대(Ⅰ)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적용하되, 자동기한연장이 되는 경우 기한연장 후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적용	연()%	%				
우대 항목	□ 기타 거래실적 등에 의한 우대(Ⅱ)	최초 도래하는 대출기간 만료일까지만 적용	연()%	%				
(11)	□ 기타 거래실적 등에 의한 우대(Ⅲ)	대출실행(기한연장, 조건변경 등 포함)일로부터 ( )일 또는 ( )개월까지 적용	연()%	%				

- ② 금리우대항목(I)에 의한 우대기간은 <u>대출신규일로부터 3개월간 적용하며, 이후(기한연장 포함) 1개월 단위로 금리우대 조건 이행 시 자동연장</u>됩니다. 만약, 매월 상기 금리우대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유지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대받은 금리가 자동으로 인상되며, 금리인상 후 상기 조건을 재이행하는 경 우에는 금리우대가 재적용됩니다. 인상된 금리변동내역은 신청하신 이자통지/금리변경내역 통지 서비스에 따라 본인에게 통보됩니다.
- ③ 우대금리 세부 적용기준 : **우대금리재산정시 아래 기준에 따라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항목별로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 1. 우대항목별 기간에 따른 실적인정기준

우대항목	적용기준
신용카드 이용실적 우대	대출실행일이 1일~10일인 경우 전전월말기준 최근 3개월 이용실적이 충족되는 경우 대출실행일이 11일~말일인 경우 전월말기준 최근 3개월 이용실적이 충족되는 경우 가. 실적산정기간 최종월의 익월 5일까지 KB국민카드社에 신용카드 이용전표(취소전표 포함)가 매입되지 않은 경우, 해당 이용금액(취소금액 포함)은 다음 금리산정 기간의 실적으로 반영됩니다. 나. 신용카드 이용금액에서 현금서비스금액, 연회비, 제 수수료, 연체료는 제외됩니다.
자동이체 실적 우대	대출실행일이 <b>1일~10일</b> 인 경우 <b>전전월말기준</b> 으로 <b>제1항에서 정한 실적기준 건수 이상</b> 이 충족되는 경우 대출실행일이 <b>11일~말일</b> 인 경우 <b>전월말기준</b> 으로 <b>제1항에서 정한 실적기준 건수 이상</b> 이 충족되는 경우
급여(연금)이체 관련 실적 우대	우대금리 재산정일 <b>전월말기준 최근 3개월간 2회 이상</b> 본인 계좌로 <b>제1항에서 정한 실적기준금액 이상</b> 급여(연금) 이체 실적이 확인되는 경우
예금 관련 실적 우대	우대금리 재산정일 <b>전일 기준</b> 으로 <b>제1항에서 정한 실적기준금액 이상 유지 실적</b> 이 확인되는 경우
전자금융 관련 실적 우대	우대금리 재산정일 <b>전일 기준</b> 으로 최근 <b>1개월 이내</b> 송금실적이 확인되는 경우

## 2. 기타 세부적용기준

- 가. 신용카드 이용실적 우대: 결제계좌가 당행인「KB국민카드」社의 개인신용카드 이용실적이 제1항에서 정한 실적기준 금액이 있는 경우 최근 3개월 카드이용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합니다.
- 나. 자동이체 실적우대: 본인 계좌로 **아파트관리비, 지로, 금융결제원CMS, 펌 뱅킹 자동이체** 출금실적이 있는 경우에 인정되며, **계좌간 자동이체는** 제외됩니다.
- 다. 급여(연금)이체 관련 실적우대
  - 1) 급여(연금)임을 알 수 있는 방법
    - 지정(등록)된 급여(연금)일자(전후 1영업일 포함 3영업일)에 제1항에서 정한 실적기준금액 이상 급여이체실적이 있는 경우[급여(연금)이체일자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은행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고 변경 요청하여야 합니다]
    - 적요에 월급/급여/수당/급료/상여/보너스/봉급/연금/성과급/보로금/임금/salary/bonus/pay 라고 표시되어 있는 경우 ※ 당행 본인 계좌에서 이체 건은 위의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제외됩니다.
  - 2)「KB급여이체 신용대출」기본 우대의 경우 '제3항 1의 급여(연금)이체'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

라. 종합통장자동대출 한도소진율 우대: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해 산출된 은행신용등급(이하 '신용등급') 및 종합통장자동대출 한도소진율에 따라 매월 우대금리를 변경 적용합니다.

그리사츠이 기즈 지저 1개위가이 펴그 하드人지으	우대금리			
금리산출일 기준 직전 1개월간의 평균 한도소진율 	신용등급 1~6등급	신용등급 7등급 이하		
한도소진율 25%이상 40% 미만	연 0.10%	연 0.05%		
한도소진율 40%이상 50% 미만	연 0.20%	연 0.10%		
한도소진율 50%이상 80% 미만	연 0.30%	연 0.15%		
한도소진율 80%이상	연 0.40%	연 0.20%		

- 1) 종합통장자동대출 한도소진율에 의한 우대금리는 은행에서 정한 신용대출에 한하여 적용합니다.(일부 협약대출 적용제외)
- 2) 종합통장자동대출 한도소진율에 의한 우대금리는 매월 산출하며, 금리산출일 기준 직전 1개월간의 평균 한도소진율 ["매일 한도소진율(대출사용금액÷대출약정금액)합÷금리산출일 기준 직전 1개월간 일수"로 계산하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사]을 산정하여 다음 1개월간 신용등급별로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
- 3) 한도소진율산정 후 요구불통장에 대한 정정거래 혹은 취소거래가 있는 경우에도, 이미 계산된 한도소진율 및 우대금리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 4) 종합통장자동대출 계좌가 미수채권, 특수채권 등에 편입될 경우 종합통장자동대출 한도소진율에 의한 우대금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마. 기타 거래실적 등에 의한 우대( I ~III) : 은행 거래실적이 우수하거나 거래실적 증대가 예상되는 경우 제1항에서 정한 우대기간까지 적용합니다.

## 제7조 담보, 보험 및 추가담보 제공

- ① 본인은 은행의 대출을 받아 건설 또는 구입하는 시설물과 건물(대출 받은 토지 위에 건설하는 시설물, 건물 포함)은 건설도중이나 건설완료 후에도 은행의 승인 없이 그 소유권 이전행위, 저당권, 지상권(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을 세우거나 수목을 심어 소유하려는 목적으로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전세권, 가등기, 임차권 등 각종 권리의 설정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제3자로부터 은행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기로 하며, 동 시설물과 건물은 토지와 함께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기로하고, 은행이 요청하는 경우 은행이 동의하는 종류와 금액의 보험에 가입한 후 그 보험금 청구권에 은행을 위하여 질권설정하기로 합니다.
- ② 본인이 담보로 제공할 토지에 대하여 지적공부 및 등기부정리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토지의 지적정리 완료 후에도 제1항을 준용하기로 합니다.
- ③ 본인이 담보로 제공한 담보물의 담보가치가 감소(후취담보취득을 할 때 포함)한 경우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6조(담보의제공)에 따르기로 합니다.

#### 제8조 한도거래방식 대출 대출금 지급 방법 등

- ① 이 약정에 의한 채무가 있는 때에는 종합통장기본계좌 및 가계당좌예금 (이하 "모계좌"라 합니다)에 입금된 자금(증권류의 금액은 결제될 때까지 이 자금에서 제외하며, 입금된 증권 등은 이 약정에 의한 채무의 담보로서 은행에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은 자동적으로 대출금 변제에 충당하기로 합니다.
- ② 모계좌에 대해 그 잔액을 초과해서 지급요구하거나 정기적으로 지급금 및 각종 요금 등의 자동납부 요구가 있는 때에는 모계좌를 통해 대출금을 지급하거나 자동납부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③ 은행은 어음•수표대금의 지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더라도, 제1조 제3항의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은 초과된 금액을 곧 갚기로 합니다.
- ④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모계좌에서 인출하거나 제1조 제3항의 한도금액 이내에서만 대출금에 더하기로 하며, 한도금액 부족으로 원금에 가산되지 못한 미납이자는 곧 갚기로 합니다.
- ⑤ 원금에 가산된 이자가 한도금액에 도달하여 한도금액의 부족으로 이자의 일부라도 원금에 가산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족금액을 곧 변제하거나 해당 모 계좌에 변제를 위하여 입금하기로 하며, 모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미납이자 및 지연배상금 변제에 최우선적으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 제9조 대출금 상환 또는 채무인수 의무

- ① 대출을 받은 후 해당 시설물과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은행이 인정하는 양수인으로 하여금 채무를 인수하게 하거나 대출금 전액을 상환합니다.
- ② 이 약정에 의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은행의 요구에 의하여 곧 대출금 전액을 상환합니다.

#### 제10조 채무인수 불허 특약

한도거래방식 대출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에도 이 대출은 부동산 양수인에게 인계되지 아니합니다.

## 제11조 가계당좌예금을 모계좌로 하는 대출특약

- ① 모계좌가 가계당좌예금인 종합통장자동대출 및 가계당좌대출의 경우, 이 약정에 의하여 본인이 발행한 수표를 지급함으로써 은행에 대해 구상채무[채무자가 돈을 대신 갚아준 사람(또는 기관)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지게된 때에는, 이를 대출금 채무로 삼아 이 약정에 따라 갚기로 합니다.
- ② 모계좌가 가계당좌예금인 종합통장자동대출 및 가계당좌대출의 경우, 은행은 수표의 지급거절에 따른 본인의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예상되는 등 필요한 경우 본인이 대출기간 만료일전에 발행된 수표를 대출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지급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생긴 대출금에 대하여도 이 약정이 적용됩니다.

#### 제12조 기한연장

- ① 대출기간이 만료된 때 은행이 정한 방법에 따라 기한연장되거나, 연장에 따른 대출이자율이 변경된 때에도 계속하여 이 약정에 따르기로 합니다.
- ②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자동연장조건에 일치할 경우, 은행은 "기한연장 및 금리변경"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서 등을 받지 아니하고 은행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한연장 및 금리변경 처리하기로 하며, 은행은 기한연장된 대출금의 이자율과 새로운 대출기간 만료일 등을 연장 후 10일 이내에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기로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변경된 이자율에 이의가 있을 때는 변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지일 까지는 변경 전 대출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하고 해당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은행에 대한 상환채무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지연배상금률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또한 동 기한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제13조 대출실행 중단

은행은 대출계약 체결 후 대출실행 전에 차주에게 대출 증가, 연체 발생, 신용등급 하락 등 차주의 신용위험, 상환능력이 악화되거나 차주가 제공한 정보의 내용이 달라져 대출 실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대출을 실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14조 인지세의 부담

- ① 이 약정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는 각 50%씩 본인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본인이 부담하기로 한 인지세를 은행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4조에 준하여 갚기로 합니다.

#### 제15조 질권의 목적인 예금 등의 표시

(단위:원)

종별	증서번호 또는 계좌번호	명의인 또는 위탁자 수익자	약정일까지 입금누계액	담보제 <del>공금</del> 액 (대 <del>출금</del> 액의 110%)	신규일자	만기일자

#### 제16조 담보권 설정

- ① 이 약정에 의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15조에 표시한 예금 등에 질권을 설정하고 은행 앞으로 그 증서(통장)의 인도를 마쳤습니다.
- ② 제1항에 의한 질권의 효력은 원금•수익권(이 계약 이후에 적립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과 이에 부수하는 이자•수익의 수익권, 특별장려금, 법정장려금 등에 미칩니다.
- ③ 예금 등이 기한연장•개서(새로씀)•갱신•분할•병합•증액•감액 또는 이자가 원금에 가산된 경우에도 그 위에 질권의 효력이 미침을 승인하며, 그 목적인 신탁이 기간연장되거나 연체로 말미암아 자동연장처리된 경우에 있어서도 그에 대한 수익권 위에 효력이 미침을 승인합니다.
- ④ 은행은 제1항에 의한 질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의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의 채권과 제15조에 표시한 예금 등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 ⑤ 적립식예금 관련 대출인 경우 은행은 대출금이자 및 제1항의 질권의 목적인 관련 예금 등의 월적립금이 6개월(적립식신탁대출의 경우 4회)이상 납입지체된 때에는 대출기간 만료일 이전이더라도 통지에 의해 담보예금 등과 대출금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 제17조 한도거래방식 대출 대출금 인출 제한

① 은행은 채무자에게 금융기관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정해진 신용거래정보 중 연체정보, 대위변제(채무자를 대신하여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가 채무를 갚아주는 행위) · 대지급(채무자가 기일 내에 돈을 갚지 못한 경우 지급보증을 한 은행(또는 정부)에서 대신 지급하여 주는 것)정보, 부도정보,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공공기록 정보가 등록된 때에는제1조 제3항의 대출(한도)금액에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금 인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인	:	(서명	뚜는	ŌΙ)
	•	(,,10	ㅗㄴ	L./

② 제1항에서 정한 사유가 해결되어 없어져서 정상적 여신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은행은 인출 제한을 해제하기로 합니다.

## 제18조 대출금 수령 위임

본인이 은행으로부터 이 약정서에 의해 대출을 받음에 있어 동 대출금(부대비용을 정산하지 않은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의 수령할 권한을 제19조와 같이 위임하며, 이에 따른 분쟁 등이 있을 경우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본인이 책임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 제19조 개별거래방식 대출 대출금 수령계좌 지정 · 수령위임 표시

대추고시경제지	계좌번호 :
네돌급구성세작	예금주 :
위임자(채무자)	(서명 또는 인)

### 제20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의 적용

본 약정서에 추가하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이 적용됩니다. 추후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바에 따릅니다.

#### 제21조 기타특약사항

본 인:	(서명 또는 인)
± U·	(시 o ㅗ근 건)
	[대출거래약정 끝]

	[개별거래방식	대출 자동이체	신청 (□ 신	청 □미신청)]
--	---------	---------	---------	----------

본인은 대출신청을 함에 있어 아래의 계좌간 자동이체약관을 승인하며, 아래와 같이 자동이체를 신청합니다.

연결계좌번호		이	체	일	매월일
이 체 한 도	□ 대출한도 이내(신청이 없는 경우 포함) □ 예금잔액 이내	비	용 처	리	□ 제 비용은 출금하여 처리해 주십시오.

## 계좌간 자동이체 약관

#### 제1조 [자동이체 방법]

- ① 은행은 거래처의 자동이체 신청에 따라 지정일에 통장, 수표, 지급청구서 없이 출금계좌에서 이체금액(영업시간 이내 입금분에 한합니다)을 입금 계좌로 이체합니다. 다만, 입금계좌가 퇴직연금인 경우에는 18시 전 입금분에 한해 입금계좌로 이체합니다.
- ② 지정일이 영업일이 아닌 때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체합니다. 다만, 정기예금 및 신탁 월지급 이자는 그 전 영업일에 이체합니다.
- ③ 통장자동대출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출금액을 포함하여 이체합니다. 다만, 고객이 따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금잔액 이내에서만 이체 할 수 있습니다.

#### 제2조 [지급자금 부족 때의 처리]

- ① 이체 지정일에 출금계좌의 지급자금이 이체금액에 미달하면 부족자금이 채워지는 날에 이체(영업시간 이내 입금분에 한합니다)합니다. 다만, 이체주기를 매 영업일로 정하는 경우 해당 이체 지정일에 출금 계좌의 지급자금이 이체금액에 미달하면 부족자금이 채워지는 날에도 이체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금계좌가 대출계좌, 집합투자기구(펀드), 퇴직연금인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제3조 [여러 건의 이체처리]

같은 날에 이체대상이 여러 건 있는 때 이체처리순서는 은행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제4조 [증권의 부도]

거래처의 출금계좌에 입금한 자기앞수표, 가계수표 등 증권이 지급 거절 되었을 때는 자동이체 처리된 금액을 취소합니다.

## 제5조 [신청내용의 변경, 해지신고]

거래처가 신청내용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는 이체지정일 전 영업 일까지 은행에 신고해야 합니다.

#### 제6조 [이체일 및 이체금액 미지정 때 처리]

거래처가 부담하여야 할 수수료, 채무 등 이체대상만을 지정하고 이체일 및 금액에 대한 지정 없이 자동이체를 신청한 때는 은행은 그 대상거래가 발생했을 때 이체합니다.

#### 제7조 [은행의 자동이체 임의해지]

전월 말일 기준으로 5개월 연속 미이체 시 SMS 등과 같은 전자적 매체로 통지하며 6개월이상 이체되지 않은 때에는 자동이체 등록을 해지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입금계좌가 퇴직연금인 경우 6개월이상 이체되지 않더라도 등록을 해지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제8조 [외화계좌 자동이체 적용환율]

- ① 원화계좌에서 외화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이체처리일 이체시점의 대고객 전신환 매도율을 적용하여 환산합니다.
- ② 제1항의 원화계좌는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을 말하며, 외화계좌는 외화예금, 외화로 거래하는 집합투자기구(펀드) 또는 외국집합투자기구 (역외펀드) 계좌를 말합니다.

#### 제9조 [집합투자기구(펀드) 자동이체 처리]

- ① 입금계좌가 집합투자기구(펀드) 계좌인 경우 지정일에 출금계좌에서 이체금액을 출금하여 별도의 신탁계정에 예치 후, 집합투자기구(펀드)별 규약에서 정한 판매가격(매입기준가격)적용일에 입금계좌로이체합니다. 다만, 외국집합투자기구(역외펀드)에 투자하기 위하여해외로 송금하는 경우 별도의 신탁계정에 예치하지 않고 입금계좌로이체할 수 있습니다.
- ② 이체지정일에 출금계좌의 지급자금이 이체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자동이체 처리가 불가합니다.
- ③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가 지급계좌일 경우에는 이체금액을 별도로 신탁계정에 예치하지 않고 이체금액만큼 지급정지되며, 각각의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매입기준가격 적용일에 출금하여 입금계 좌로 이체합니다.

#### 제10조 [대출계좌 자동이체 처리]

① 이체 지정일에 출금계좌로 입금되는 금액은 당일 중 지정된 대출계좌

로 이체합니다.

- ② 이체 지정일에 출금계좌의 출금가능금액이 이체금액에 부족할 경우 약정납입일 전일까지는 부족한 금액이 채워지는 날 이체됩니다. 다만, 약정납입일 부터는 영업시간 마감 이후 상환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1. 일시상환은 출금계좌의 출금가능금액 이내에서 약정이자를 일단 위로 이체합니다.
  - 2. 분할상환은 출금계좌의 출금가능금액이 1천원 이상일 경우 할부 금을 원단위로 이체합니다.
  -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협약대출, 정책자금, 파생연계상품 등은 제2조 본문에 따라 처리합니다.
- ③ 납부할 할부금의 일부 금액이이체되는 경우 연체기준일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 제11조 [퇴직연금 자동이체 처리]

이체지정일에 출금계좌의 출금가능금액이 이체금액에 부족한 경우 이 체지정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부족한 금액이 채워지는 날에 이체됩 니다.

#### 제12조 [계좌이동서비스]

- ① 계좌간자동이체는 계좌이동서비스 대상이며, 계좌이동서비스 이용약 관을 준용합니다.
- ② 은행은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www.payinfo.or.kr)에 자동이체 등록정보를 제공하여 조회 및 해지, 출금계좌 변경신청이 가능하도록 한니다
- ③ 거래처는 은행 지점,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www.payinfo.or.kr), 애플리케이션에서 계좌이동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④ 거래처가 은행 지점,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www.payinfo.or.kr), 애플리케이션에서 자동이체 출금계 좌를 당행계좌로 변경 신청할 경우 다른 금융기관 출금계좌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이체 해지 후, 당행 출금계좌로 신규 등록 됩니다.

#### 제13조 [약관의 변경]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약관의 변경 조항을 따릅니다.

## 제14조 [준<del>용</del>]

- ① 계좌간자동이체 거래에는 이 약관 외에도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이 적용되며, 규정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이 약관의 규정이 우선합니다.
- ②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금거래 기본약관,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관련예금 및 신탁약관을 준용 합니다.

## 부 칙

(시행일) 제9조 집합투자기구(펀드) 자동이체 처리는 2010년 9월 13일 부터 시행합니다.

## 부 칙

(시행일) 제10조 대출계좌 자동이체 처리는 2011년 1월 7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 칙

(시행일) 제7조 은행의 자동이체 임의해지는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별첨] 자동이체 출금우선순위

- 1. 영업개시전 : 정기예금 이자지급
- 2. 영업시간중: 타행자동이체, 대출이자, 신탁, 요구불이체, 선일자 등 영업점 직접처리분
- 3. 영업시간후: 다음 그룹 순서에 의해 처리되며, 그룹내 처리 순서는 없음.
  - 1그룹: 대출이자, KB카드대금, 영업점 개별 처리건(APT관리비 등)
  - 2그룹: 대외청구자금(VAN, CMS, GIRO 등)
  - 3그룹: 기타 수신 계좌이체, 적립식 예금이체(신탁포함), 요구불간 이체 등
- ※ 납부자자동이체 :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개인(신용)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관련 고객권리 안내문

## 1. 금융서비스 이용 범위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고객이 동의한 목적을 위하여만 수집·이용·제공됩니다. 필수적 정보에 대한 수집·이용·제공은 계약의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금융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반면 선택적 정보에 대한 수집·이용·제공에 대하여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금융거래 조건 등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 고객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마케팅 활용 중단 신청

가. 고객은 가입신청 시 동의한 본인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 또는 귀행의 금융상품(서비스) 소개 등 영업목적의 사용에 대하여 전체 또는 사안별로 당행에 제공·활용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다만 ① 법률에 특별한 규정주)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②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공·활용 중단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주)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조회회사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한 신용정보의 제공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단서)
- 나. 본인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마케팅 활용 중단을 원하시는 고객은 아래의 매체를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인터넷접수 : www.kbstar.com
    - 전화접수 : 당행 콜센터 1588-9999, 국민카드 고객센터 1588-1688
    - 서면접수 : 당행 전 영업점
- 다. 위의 신청과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가 있으신 경우 당행의 신용정보관리·보호인/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전국은행연합회(민원상담실), 금융감독원(금융민원실)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당행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연락처: 정보보호부 02-2073-6745,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3
    - 은행연합회 : 민원상담실 1544-1040. 서울시 중구 명동11길 19(명동 1가)
    -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실 133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 3. 고객 개인(신용)정보의 자기정보결정권

- 가. 고객은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등에 따라 아래의 권리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동 권리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당행 홈페이지(www.kbstar.com)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동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행 홈페이지(www.kbstar.com) 또는 각 영업점 앞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신용)정보 열람 및 오류 개인(신용)정보의 정정·삭제 요구권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36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 당행에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및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열람한 후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사실 통보 요구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 신용정보회사 등이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이용·제공한 경우 매1년마다 이용·제공 현황을 통보해줄 것을 "정기통지 신청"을 통해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신용정보 삭제요구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
    - 당행과의 금융거래 종료 후 법령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 시 당행이 보유한 본인 정보의 파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사실 조회 요청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 금융회사가 내부경영관리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해 제공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중인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권리
  - 연락중지 청구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 원치 않는 마케팅 목적의 연락(휴대폰 전화 또는 문자메세지)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 나. 고객은 본인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마이크레딧, 크레딧뱅크, 사이렌24, 올크레딧 등)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 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개인신용평가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크레딧: 02) 1588-2486, www.mycredit.co.kr
  - 크레딧뱅크 : 02) 3771-1004, www.creditbank.co.kr
  - 사이렌24: 02) 1577-1006, www.siren24.com
  - 올크레딧: 02) 708-1000, www.allcredit.co.kr

## 4. 개인(신용)정보 유출시 피해보상

당행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신용)정보 유출로 고객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